

## 민원조사 결과

구분	지적 및 조치 요구
<b>출판인쇄 독서진흥과</b>	<p>○ 간행물윤리위원회(이하 “간윤위”) 상근위원의 위촉해촉은 내규상 간윤위의결 사항으로,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) 원장이 간윤위의결(7.23.) 전 상근위원 A를 일반 직원으로 전보하고, 기획조정팀 B를 상근위원으로 발령하는 등 실질적으로 상근위원을 위촉해촉하는 인사 명령을 지시·결재한 것은 간윤위원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수 있어 부적정</p> <p>☞ 인사업무 등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진흥원에 대해 “기관주의” 조치</p>